

提高—自然保護

— 이제는 줌던 쓰레기도 안줍는데 —



朴 昌 根
(社)環境教育會委員長

그동안 열심히 쓰레기를 줌던 自然保護도 요즈음엔 왜지? 시들해져 (?) 있다.

봄이 시작되는 지금, 다시 自然保護를 再考한다.

1. 自然과 自然保護에 대한 意義

自然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지만 이 문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간단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다. 어쩌면 이 문제는 그리 간단히 규정지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므로 여기에서도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않기로 한다. 사물에 대한 既知의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 이외의 未知의 부분이 있음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지와 미지의 한계도 그다지 명확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끊임없이 미지의 부분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그 경계도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던 일이 다른 부분을 개척해 가는 사이에 알 수 없게 되어 버리는 일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과학적 연구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와 동시에 모든 일이 언젠가는 기지의 사실로 된다고 간단히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현재의 단계로서는 언젠간 기지의 사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류의 지적활동이 진보하더라도 알 수 없는 부분은 더욱 더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적어도 어떻게 하여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가 라는 방법론조차 우리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인공적으로 창조할 수 있

더라도, 무엇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는가 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생명이 태어나 그것이 현재의 다양한 자연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그 속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것들을 장차 해결할 수 있을런지 조차도 현재의 단계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自然」의 개념도 현재 단계로서는 一義的으로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은 그런 갖가지 제약 또는 前提를 가진 한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추상적인 사색으로 그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건강은 損傷당하고 있으며, 장래의 일을 생각하면 조속히 실행해야 할 문제들이 山積해 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연」이라든가 「인간」이라는 문제를 일의적으로 정의내릴 수 없는 단계에서 「자연보호」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행과 결부시켜 생각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자신을 관찰해 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자연보호라고 할 경우 자연을 인간 밖에 존재하는 것, 인간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동시에 인간이 자연속의 구성분자로 존재하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도 또한 잘못이다. 자연속의 인간이 구체적으로 자연에 작용하고 또 자연에 의해 삶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분명하며, 역사의 법칙, 과학의 법칙을 밝아가는 것, 이것은 辨證法的인 자연과 그 보호에 대한 생각일 것이다.

자신이 받은 것을 보다 좋은 형태로 다음 세대에 남겨주는 사이에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럴 때 보다 좋게라는 것, 그 자체가 결코 간단히 파악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바로 끝없는 노력의 목표이며 試行錯誤 속에서 계속 檢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런 까닭에 그 곳은 또한 謙虛함이 필요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인간의 작용이 그 환경에 급격히 큰 변화를 주게 된 때, 특히 이러한 배려가 필요하다.



자연을 보존한다는 것은 인간을 보존하는 일이며, 인간은 자연을 보존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Wildness의 보존도, 결국 그 곳을 찾은 인간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큰 감격을 받^{으므로}써 인간이 보다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견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써,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wildness는 아닌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연이란 무엇인가를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더라도 인간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꼭 같이 아름다운 풍경이라 하더라도, 사막에서 자란 사람들이 느끼는 자연의 美와 濕潤地帶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美는 다를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류에게 보편적인 自然美가 존재하는지조차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歷史性을 초월하고, 地域性을 초월하여 공통의 美의 관념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같은 인류로서 美에 접하므로써 감동을 받는 공통의 장소는 갖고 있는 것이다.

2. 自然保護에 대한 世界的 행동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받음으로써 살아가는 인류는 현대에 들어 고도의 과학의 발달과 산업의 발달로 엄청난 환경공해를 가져오고 자연에 돌이키기 어려운 위해를 끼쳐가고 있다. 이에 세계의 선진제국에서는 공해방지와 자연보호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보호에 대한 생각은 최근에 들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추적하므로써, 자연보호라는 개념이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國際自然保護聯合 (IUCN)의 역사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IUCN이란 정확히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로서 「자연과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국제연합」이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 IUCN은 본래 제 2차대전이 종료된 후 1948년 9월에 UNESCO와 프랑스 정부의 주선으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당시 이 회의에 출석한 나라는 31개국이었다. 그리고 1956년까지는 IUPN으로 부르고 있었다. 즉 International Union for Protection of Nature로서 문자 그대로 「自然保護聯合」이었다.

그리고 1956년 6월에, 이미 戰前인 1928년에 만들어진 「국제자



연보호사무국 (International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Nature) 를 합병하여 현재의 기구가 되었던 것이다. 이 기구는 국가로서 가맹하고 있는 곳도 있고 국제적 조직으로서 가맹한 곳도 있으며 또 국내조직으로서 가맹해 있는 곳도 있다.

1956년 이 IUCN이 발족했을 당시 IUCN으로서 자연보호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됐다.

<전세계에 걸친 생물의 사회 및 그 곳에 본래부터 서식하는 생물을 보존하고, 이것을 현명하게 이용할 (Wise Use) 것, 이렇게 하므로써 인류 사회경제의 번영과 행복한 조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當聯合은, 주의깊게 보존하므로써 동물, 식물 및 땅 속에 사는 생물체가 영구히 再生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재생산되는 모든 자연자원이란 資本을, 불합리한 浪費나 무책임한 약탈을 하지 않고 축적해 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현명하게 사용한다는 말에 대해 연합으로서의 이치럼 예를 들어 은행에 예치된 자본이 낚는 이익을 주의깊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일로 이해하고 있다>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1956년의 시점에서는 자연보호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국립공원의 지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 나라도 근년에 들어 자연을 보호하자는 의도에서 여러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있지만 국립공원을 처음으로 생각해 낸 것은 1870년 미국에서 었다.

1776년 독립이래 조금씩 서쪽으로 서쪽으로 향한 미국의 프론티어 들은, 1848~9년 캘리포니아의 고울드·러쉬를 거쳐, 다시 1861~3년 남북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서부개척에 착수하고자 몇개의 탐험대가 서부의 미개발지역에 파견되었다.

그때 우연히 이 탐험대 중의 한 隊인 돈·워슈비언隊가 1870년 늦은 여름에 열로우스톤지방에 도착했다. 그들은 이 놀라운 景觀을 발견하고 매우 감명을 받았다. 2개월 남짓한 탐험을 끝내고 9월 19일밤, 그 高原에서 야영불을 둘러싸고, 대원들은 아직 국가의 영유지도 되어 있지 않은 이 대자연의 서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큰 논의가 벌어졌는데, 이때 갑자기 대원중에 가장 연장자인 몬타나州의 판사, 코오벨리어스·헤지스가, 「이같은 천부의 토지는 개개의 인간이 사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국립공원으로서 후세에 전하여 미국 국민의 공공의 복지를 위해 영구히 이를 보존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神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대원일동이 이 숭고한 제안에 찬성하여 전대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이것을 정부에 청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대통령은 그랜트장군 이었다.

이리하여 2년후인 1872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서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지정됐던 것이다. 약 10년 늦게 캐나다에서는, 범프를 중심으로 하는 국립공원이 지정되었다. 규모는 전자가 약 9천평방킬로미터, 후자는 7천평방킬로미터이다. 미국에서는 엘로우스톤이 가장 크지만 캐나다에서는 4만5천평방킬로미터인 우드·버팔로가 있다.

3. 自然保護에 대한 責任 意識

현재로서는 自然保護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몇가지 점을 정리해 두기로 한다. 자연보호 문제는 현재로서는 첨단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석유위기 이래 환경문제보다 에너지문제가 더 중대시되고 그것과 관련하여 인구·식량문제 등이 사회를 시끄럽게 하여 일반시민도 별로 자연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된 것 같다. 한편 물가의 상승, 불경기의 영향을 받아 자연문제와 환경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또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 건강이나, 자동차공업의 보호육성이냐 하는 문제로서 갖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개발이나 환경파괴이냐 하는 문제의 정립은 잘못이다. 문제는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느냐는 것이지,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과제는 현상에서 출발하여, 어느 방향으로 향해 노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기본적인 자세는 인간의 건강, 인간의 생명을 제 1의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필요성에서 보기보다, 인간의 健全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로서는,

- ① 개발규제와 사유재산의 조정, 대도시와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지역과의 지역간 상호조정
- ② 민간기업의 先取的인 토지취득, 어수선한 개발에 의한 사회적 혼란



③ 기업에 의한 지나친 산림취득

④ 민간 레크리에이션개발의 규제가 불가능한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발과 자연보호의 문제 국가적 또는 자연적 이해에 관련하여 자연을 지키는 문제는 국부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희생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자연을 지키는 문제는 국가전체로서 민족전체로서 지키는 관점에서 만이 국가의 자연은 지켜지는 것이다. 자신의 손이 타인을 희생해서 자연을 지키는 생각으로는 자연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꺼번에는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 계획으로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자연보호에 있어서의 개인의 책임문제도 야기된다. 또 여기에는 사회와 개인, 국가와 국민, 자연과 인간, 그러한 높은 차원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자연보호란 것을 자신의 문제로 삼는 사람은 매우 높은 모럴을 지향하는 것이 된다.

사실 개개인의 생활이 풍족하지 못하고, 타인을 밀어 짓히고 살아가야 하는 현상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속에서 풍요함을 느낀다는 따위의 생각은 의미가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연 속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풍요함을 가능하게 하며, 그런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찾을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류가 나갈 길이다.

엘로우스톤공원을 국유로 하고 민족의 것으로 하려 했던 미국의 개척자들의 생각은, 그 곳에서 자신의 토지, 자신의 나라를 느꼈던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본래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풍요함을 찾아왔다. 그러나 현재는 예를 들어 국립공원의 청소와 관리는 나라가 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 自然保護란 이름으로 쓰레기를 좇아 오던, 행사도 지금은 웬지 시들해지고 있다. 쓰레기라도 줍는 自然保護운동의 활성화가 아쉽다. 스스로, 보다 좋은 나라를 만들고, 보다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부가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델란드를 위한 환경선언」의 제 10항 마지막 1행은 「시민에 대한 충고」로서,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환경문제를 중요한 지표로 삼으라」고 쓰여 있다. 개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그 사람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역시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다.



개정 의료보험 안내

● 피부양자 범위에 장인·장모

피보험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장인 장모가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 당연대상

-배후자(처)의 부모(배우자가 무남독녀인 경우)

○ 동거조건

-배우자의 부모(배우자의 20세 이상인 남자 형제가 없고 여자 형제만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조부모(배우자의 아버지가 없고 또한 아버지의 형제중 20세 이상자가 없는 경우)

○ 부양조건 대상

● 배우자(처)의 부모

배우자의 20세 이상인 남자 또는 여자 형제가 있더라도 다음에 해당되어 그 부모를 부양할 수 없을 경우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

-단기하사 이하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경우
-심신장애자 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인 경우

-대학교 이하의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 배우자(처)의 직계존속

피보험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가 유지됨을 보험자가 확인하고 동확인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보험료 징수기간의 계산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하던 것을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변경됩니다.

● 연금·일시금 등 수급자의 적용확대 및 가입구분

퇴직·퇴역연금 일시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의 수급자도 퇴직·퇴역연금의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피보험자로 됩니다.

● 의료보험의 적용 구분 명칭 변경

의료보험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1종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사업장의 근로자)

제2종지역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장피보험자를 제외한 지역주민)

제2종직종의료보험조합



직종의료보험조합
(직장, 지역피보험자를 제외한 동일직종 종사자)

● 연체가산금의 계산

종래 은행의 연체이자 방식을 공과금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보험료 체납시 자격상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국민자 제외)가 보험료를 체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기간 180일 제한의 완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은 동일상병의 보험급여기간은 평생 통산 180일이던 것을 상병 구분없이 연간 180일로 완화되었습니다.

● 보험급여의 개시일

자격확인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안에서 보험급여의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체납시 보험급여 제한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때에는 보험료의 완납시까지 보험급여를 제한받게 됩니다.

● 요양취급기관의 요양의 내역 및 영수증 발급

진급·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요양취급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 진료비 명세가 표기된 영수증을 발행받아 해당조합에 제출해야 됩니다.

의료보험조합연합회